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86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7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05월 27일, 박영한 의원 외 23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05월 30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4년 06월 27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영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전국의 약 10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, 1915년 8월부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.
- 의용소방대의 간부 임기를 살펴보면, 대장·부대장의 임기가 있는 반면 부장의 임기가 없음.
- 이에 조직 내 형평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장의 임기를 정해야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부장의 임기 규정(안 제7조제1항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에서 간부로 활동 중인 부장의 임기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, 이를 불식시키면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부장에 대한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 1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<신 설>  ①·② (생 략)	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 및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 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#### ■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

- 의용소방대<sup>1)</sup>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「소방법」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에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‘법’이라 함)을 제정하였으며,

1)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,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,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

-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」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, ‘조례’라 함)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.
-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법 제2조2)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) 및 별표2(붙임 1. 참조)에 따라서 남성대와 여성대로 편성된 본대의 의용소방대(이하 ‘본대’라 함)와 안전센터에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(이하 ‘지역대’라 함),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·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‘전문대’라 함)를 구성하고 있으며
- 2024.5.31.일 기준으로, 의용소방대는 본대 50대와 지역대 119대, 전문대 30대로 총 199대를 편성하면서 4,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임.([표 2 참조])

- 
- 2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3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(의용소방대의 명칭)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·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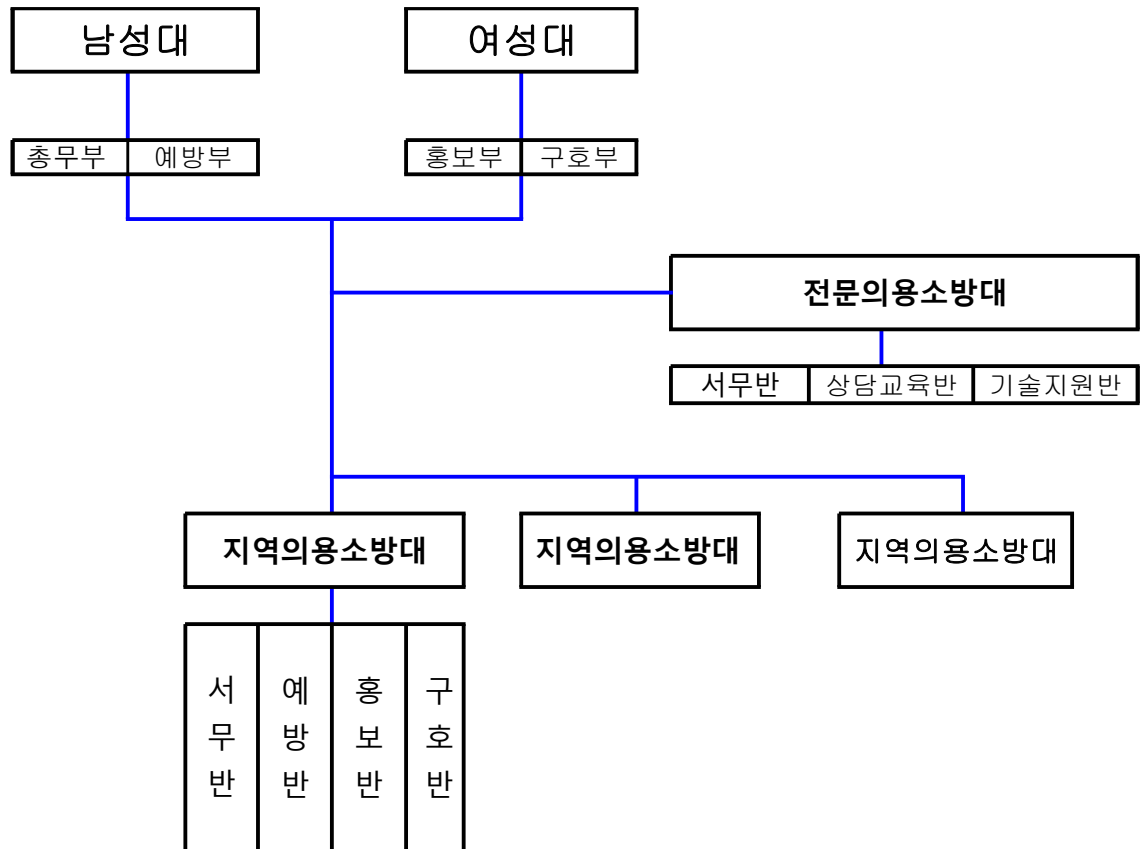
**[표 2] 2024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**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54.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</li> <li>○ 1958.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</li> <li>○ 1972. 12. 20.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</li> <li>○ 2008.1월 소방기본법에 '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' 설치근거 신설</li> <li>○ 2014. 1. 28. "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" 제정 공포(7월29일 시행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직운영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직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국 총 3,689대, 총 94,717명으로 구성 활동 중</li> <li>- 서울시 :(정원) 의용소방대 199대, 대원 4,980명 <b>(현원) 의용소방대 199대, 4,500명</b>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4">대수(대)</th> <th colspan="4">대원수(명)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본대</th> <th>지역대</th> <th>전문대</th> <th>계</th> <th>본대</th> <th>지역대</th> <th>전문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원</td> <td>199</td> <td>50</td> <td>119</td> <td>30</td> <td>4,980</td> <td>2,000</td> <td>2,380</td> <td>600</td> </tr> <tr> <td><b>현원</b></td> <td><b>199</b></td> <td><b>50</b></td> <td><b>119</b></td> <td><b>30</b></td> <td><b>4,500</b></td> <td><b>1,669</b></td> <td><b>2,271</b></td> <td><b>560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방업무보조 실적('24년 1분기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9,407회, 연인원 24,963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</li> </ul> </li> <li>○ 봉사활동 실적('24년 1분기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552회, 연인원 341명 참여하여 취약계층(243회) 지원 및 봉사활동(309회) 전개</li> </ul> </li> </ul>	구분	대수(대)				대원수(명)				계	본대	지역대	전문대	계	본대	지역대	전문대	정원	199	50	119	30	4,980	2,000	2,380	600	<b>현원</b>	<b>199</b>	<b>50</b>	<b>119</b>	<b>30</b>	<b>4,500</b>	<b>1,669</b>	<b>2,271</b>	<b>560</b>
구분	대수(대)				대원수(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본대	지역대	전문대	계	본대	지역대	전문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199	50	119	30	4,980	2,000	2,380	6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현원</b>	<b>199</b>	<b>50</b>	<b>119</b>	<b>30</b>	<b>4,500</b>	<b>1,669</b>	<b>2,271</b>	<b>56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확보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편성구분 : 시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</li> <li>○ 예산현황 : 총 31억 16백만원('24년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또한, 법 제6조4)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5)에서 대장, 부대장, 부장, 반장과 일반 대원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의용소방대의 본대를 '부'별로 편제하여 대장, 부대장, 부장, 대원을 두고 있으며, 지역대와 전문대는 '반'별로 편

- 4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조직)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
-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임명한다.
  -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5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조직)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하면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6)의 단서규정에 따라 부대장 및 부장을 두지 않고 대장, 반장, 대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((그림 1 참조))



[그림 1] 의용소방대 조직 구성 현황

- 현재 계급별로 대장 167명(본대 27명, 지역대 111명, 전문대 29명), 부대장 38명(본대), 부장 97명(본대), 반장 560명(지역대 476명, 전문대 84명), 대원 3,638명(본대 1,507명, 지역대 1,684명, 전문대 447명)이 활동하고 있음.((표 3 참조))

6)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조직)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,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.

(이하 생략)

[표 3] 서울시 의용소방대 직위별 인원 운영 현황(2024.5.31일 기준) (단위:명)

구 분 \ 직 위	계	대장	부대장	부장	반장	대원
계	4,500	167	38	97	560	3,638
본대의용소방대	1,669	27	38	97	0	1507
전문의용소방대	560	29	0	0	84	447
지역의용소방대	2,271	111	0	0	476	1684

### ■ ‘부장’의 임기 신설에 대한 의견(안 제7조)

- 안 제7조제1항은, 현행 조례 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와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,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법 시행규칙 제10조7)와 조례 제7조8)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 기준을 3년으로 하면서 부대장을 제외한 본대의 대장은 한 차례, 그리고 지역대와 전문대의 대장은 두 번까지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부장에 대한 임기 및 연임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. 이에

7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



8)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지역대장,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

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자발적인 사임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장기간 재직이 가능하며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평균 근무년수가 12년인데 부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약 6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.

-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, 의용소방대의 간부직으로 직위표장<sup>9)</sup>을 받는 대장, 부대장, 부장, 반장 중 대장과 부대장에게만 임기 및 연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자칫 대원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,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만 하다 하겠음.
- 또한, 법 시행규칙 제10조(대장 등의 임기)제3항에 따르면 본대의 대장과 부대장을 제외한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부장에 대한 임기를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겠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위 중 반장을 제외한 부장에 대해서만 임기를 3년(2회 연임)으로 정하고 있어 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평성 문제를 남겨두고 있으며,
- 이는 현행 의용소방대가 직위별 직위표장 즉, 계급을 부여하고 있

9) ○ 의용소방대 직위표장

직위	의용소방대장	지역대장, 부대장	전문대장, 부장	반장
직위표장				

○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의용소방대 간부는 부장의 직위까지 운영중임.

다는 점에서 부장(97명)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큰 반장(560명)까지 임기에 제한을 둘 경우 임기 종료 이후 일반 대원으로 복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조직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됨.

- 또한, 본 개정안이 임기와 연임을 정하고 있는 대상 직위의 경우, ‘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’은 제외하고 본대의 ‘부장만 대상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‘지역대와 전문대의 부장’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
- ‘지역대와 전문대 부장’까지 포함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역대와 전문대에 부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대장과 전문대장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 임명은 물론 연임 시에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,
- 본 개정안의 대상인 부장인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명과 연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따라서, 상기에서 기술한 내용에 기초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‘지역대장 및 전문대장’에 ‘부장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,



- 안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대한 본 조례 개정 이후의 경과조치도 부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([표 4 참조])

[표 4]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(안 제7조 관련)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(안)
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① <u>지역대장 및 전문대장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은</u>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 및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①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</u>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</p> <p>부칙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</u>  <u>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</u></p>

[붙임] 1.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2]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[별표 2]

**의용소방대의 명칭·구성 및 역할**(제3조 관련)

구분	명칭	구성	역할
남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남성의용소방대	남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여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여성의용소방대	여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혼성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	남성 여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(관할구역 인구 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)
지역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 ○○지역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,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,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
전문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전문의용소방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산악,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
전담 의용소방대	○○소방서 ○○전담의용소방대	남성, 여성 또는 혼성	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

※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**

**7. 수정안의 요지**

-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중 ‘본대의 부장’만 대상으로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바 ‘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’까지 포함하는 한편,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장을 추가하여 임명과 연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
-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‘지역대장 및 전문대장’에 ‘부장’을 추가하고 부칙에 ‘부장에 대한 경과조치’를 신설하고자 함.

**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#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8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6월 27일  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중 '본대의 부장'만 대상으로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바 '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'까지 포함하는 한편,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장을 추가하여 임명과 연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
-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'지역대장 및 전문대장'에 '부장'을 추가하고 부칙에 '부장에 대한 경과조치'를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7조제1항의 임기와 연임 대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대상에 '부장'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과 제2항)
- 나. 부칙에 '부장에 대한 경과조치'를 신설함.(안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면서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2항) 중 ‘지역대장 및 전문대장’을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’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’은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’으로 한다.

안 부칙의 조번호와 제목을 ‘제1조(시행일)’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<u>〈신 설〉</u></p> <p>① <u>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</u></p>	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 및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<u>〈삭 제〉</u></p> <p>①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</u> ----- ----- 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부장에 대한 경과 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”를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 의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은”을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은</u>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</u> ---- ----- 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</u></p>